

# 보건계열 대학생의 치과위생사와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인식

김애리<sup>1</sup>, 김지혜<sup>2\*</sup>

<sup>1</sup>화성과학기술대학교 바이오헬스케어학과, <sup>2</sup>백석대학교 치위생학과

## Perception of The Scope of Practice Regarding Dental Hygienist and Nurse Assistant Engaged in Dental Clinic among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Ae Ri Kim<sup>1</sup>, Ji-Hye Kim<sup>2\*</sup>

<sup>1</sup>Department of Bio-Healthcare, HwaSung Medi-Science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와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인식과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 명찰 패용 의무화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262명의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치과위생사 및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의 직업, 업무 범위, 명찰 패용 인식을 조사하였고 전공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IBM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교차분석과 One-way ANOVA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56.9%가 치과위생사와 다른 치과 보조 인력을 구별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53.0%가 '업무'로 구분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84.4%의 응답자가 치과위생사와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범위가 다르다고 하였고 80% 이상이 치과위생사 업무에는 치석 제거, 수술준비 및 협조, 인상채득이 포함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구강 내 방사선 촬영과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그리고 임시충전에 대한 응답은 50% 이하였다. 또한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 명찰 패용 의무화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32.1%에 불과하였다. 학과 전공에 따라 치과위생사와 다른 치과 보조 인력과의 구분( $p < 0.001$ ), 업무 차이 인식( $p < 0.001$ ), 명찰 패용 의무화 인지도( $p < 0.001$ )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내며, 이에 따라 향후 보건계열 대학생들에게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및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전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of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of the scope of practice of dental hygienists (DHs) and nurse assistants engaged in dental clinics (NAs) and awareness of name tag standards of dental-associated workers. A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to May 2021 of 262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ealth-related fields. To evaluat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he scopes of practice of DHs and NAs and name tag standards based on majors, chi-square tests and One-way ANOVA were performed using IBM SPSS 26.0. Findings revealed that 56.9% of respondents differentiated DHs and other dental support personnel, and 'scope of practice' was the most identified distinguishing factor at 53.0%. In addition, 84.4% of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differences in the scope of work conducted by DHs and NAs, and more than 80% responded that DH work includes scaling, preparing operations, assistance, and impression. However, less than 50% responded to dental x-ray taking, temporary appliance placement and removal, and temporary filling. Only 32.1% of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enforcement of name tag standards for dental-associated workers.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major were observed for differentiating DHs from other staff ( $p < 0.001$ ), perception of the scopes of practice of DHs and NAs ( $p < 0.001$ ), and awareness of name tag standards ( $p < 0.001$ ). These results show that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had low awareness of the legal scope of practice of DHs and the mandatory use of name tags by those employed in the dental field. Moreover, they demonstrate that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should be educated and more fully informed about the scope of practice of DHs and the enforcement of name tag standards for healthcare practitioners.

**Keywords** : Dental Hygienists, Name Tag, Nurse Assistant, Perception, Scope of Practice

\*Corresponding Author : Ji-Hye Kim(BaekSeok Univ.)

email: hippojidong@bu.ac.kr

Received December 13, 2023

Accepted March 8, 2024

Revised January 11, 2024

Published March 31, 2024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치과 의료기관 외래환자는 2011년 1669만 명에서 2022년 2445만 7000명으로 최근 10년간 약 44.67% 증가하였다[1]. 202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사회조사지표에서 치과 병/의원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는 2년 전보다 감소하였고, 의료 서비스 불만족의 이유로는 긴 대기시간, 비싼 의료비, 치료결과 미흡, 불친절 순으로 많았다[2]. 또한, 치과 의료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치과의사 요인보다 치과위생사 요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과위생사의 전문성과 진료 처치 수준이 환자의 재방문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4].

미국, 캐나다 국가에서 치과위생사의 주요 업무는 환자 구강 위생의 평가, 진단계획 및 치석 제거, 치근 활택술 등의 수행이며, 치과 보조원(Dental assistant)의 업무는 환자 관리, 치과 행정 업무, 치과 진료 수행 치과의사 지원 등으로 명시되고 있다[5-8]. 이는 두 직무를 법적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업무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1973년 의료보조원법이 의료기사법으로 개정되면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가 진료 보조의 상위인 구강 질환의 예방과 구강 보건 교육 업무 등으로 정의되며 진료 보조에 대한 법적 명시가 삭제되었다[9]. 그러나 김 등의 연구에서 의료현장에서 행해지는 치과위생사의 실무는 대부분 진료 보조업무로 조사되어 모순되게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10,11].

현재 우리나라 간호조무사는 치과 의료기관에서 진료 보조업무가 인정되어 치과 보조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12]. 치과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강 보건 협력 인력이 진료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호한 업무 구분은 의료기관 내 인력의 법적 업무 범위 이탈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1,13]. 선행 연구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법정 업무인 구강 내 방사선 촬영, 치석 제거, 불소도포 및 치면열구 전색을 시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최대 90.41%로 실제 현장에서는 치과위생사와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4]. 이러한 치과위생사의 고유 직무 분야에 대한 인식 부족은 업무 간의 혼란을 야기하고 위임진료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15-17]. 국민에게 양질의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과 관련 직종들의 업무 범위

를 명확히 정의하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 의료기관에서 올바른 진료를 받기 위한 국민의 합리적 소비 형태 증가 결과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후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은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법령이다[18].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의 목적은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즉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들 42.5%가 복장(가운, 명찰)을 보고 치과위생사를 구별하고 있었으나 예비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9,20].

기존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와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나[11,13], 치과 의료종사자의 업무 범위 인식과 명찰 패용 인식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불어 의료인 등의 명찰 착용 의무가 치과 의료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용되고 있으므로 보건계열 대학생들에게 직종별 업무 구분과 명찰 패용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나, 그 연구가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의료종사자인 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와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인식과 명찰 패용 의무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보건 계열학과 대학생들의 치과위생사와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 범위 인식 및 의료종사자의 명찰 패용 의무화 인식 수준을 확인하여 치과위생사의 인지도를 높이고 환자의 알권리를 위한 명찰 패용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치과위생사와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식 및 업무 범위 차이 인지도를 조사한다.
- 2)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치과 종사자의 명찰 패용 의무화 인식에 대해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충청 지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보건계열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중간 효과 크기 0.15, 예측 변수가 16개일 때를 근거로 G\*Power 3.1.2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표본 수가 204명으로 산출되었다.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복수 응답 및 부분 미응답 설문을 제외한 262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B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BUIRB-202104-HR-005)을 받아 진행되었다.

## 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학년, 전공, 치과 방문 경험을 포함하였다. 전공은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기타 보건계열학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기타 보건계열학과'에는 응급구조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학과가 포함되었다. 치과 방문 경험은 '있다'로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방문 이유에 대하여 '구강검진', '스케일링', '치과 교정 치료', '통증', '충치 치료', '기타'를 하위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치과위생사 인식에 대한 문항에서는 치과위생사를 '안다', '모른다'로 구분하였고 '안다'고 응답한 경우, 인식의 경로를 '학교', '매체', '치과 치료', '치과위생사 관련자가 존재하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기타' 하위문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치과위생사와 다른 치과 보조 인력의 구별이 가능한가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 구별 방법을 '복장', '호칭', '업무', '명찰', '자기소개' 하위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 인식에 대한 문항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치과 의료기관 근무 여부 인식을 '안다', '모른다'로 구분하였고 '안다'고 응답한 경우, 인식의 경로를 '학교', '매체', '치과 치료', '간호조무사 관련자가 존재하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기타'를 하위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중 치과 보조업무의 포함에 대한 문항으로 '안다', '모른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치과위생사와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또는 '없다'로 구분하였다. 치과위생사와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전문성과 숙련도 차이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로 측정되어, 높은 점수는 업무 차이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나타냈다.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 범위에 대한 항목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기존 연구[18,21]를 참고하여 18개 항목

으로 구성되었다. 항목별 응답률을 계산하기 위해 대상자들은 '맞다', '아니다', '모른다'로 중복응답 가능하게 하였으며, '모른다'는 아니라고 분류하였다.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명찰 패용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김 등[20]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대상자들에게 명찰 패용을 관찰한 경험 여부와 명찰 패용 의무화를 '안다', '모른다'로 구분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명찰 패용의 규정 준수 인식에 대한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명찰 패용 준수 수준을 높게 평가한다고 해석하였다.

## 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처리는 IBM SPSS VER.26.0 프로그램(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이었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치과위생사와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 인식, 업무 범위 차이 인지,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 명찰 패용 의무화 인지 및 관찰 경험은 빈도분석을 시행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표기하였고 전공에 따른 차이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응답률은 항목별로 빈도와 백분율로 표기하였다.
- 4) 전공에 따른 치과위생사와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전문성 및 숙련도 차이와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명찰 패용 준수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를 시행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학과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위생학과 101명(38.5%), 간호학과 56명 (21.4%), 기타 보건계열학과가 105명(40.1%)이었다. 대상자의 학년 분포는 1학년 73명(27.9%), 2학년 60명(22.9%), 3학년 94명(35.9%), 4학년 35명(13.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99명(76.0%)이 치과 방문 경험이 있었고, 방문 이유는 정기검진 84명(42.2%), 통증 38명(19.1%), 교정 치료 37명(18.6%), 치과 치료 18명(9%), 기타 15명(7.5%) 그리고 스케일링 7명(3.5%)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62)

Variables	Categories	n(%)
Major	Dental hygiene	101(38.5)
	Nursing	56(21.4)
	Other health division	105(40.1)
Grade	Freshman	73(27.9)
	Sophomore	60(22.9)
	Junior	94(35.9)
	Senior	35(13.4)
Dental clinic visiting experience	Yes	199(76.0)
	No	63(24.0)
Reason for visiting (N=199)	Oral examination	84(42.2)
	Scaling	7(3.5)
	Orthodontic treatment	37(18.6)
	Pain	38(19.1)
	Dental treatment	18(9.0)
	Other	15(7.5)

### 3.2 치과위생사 인식도

#### 3.2.1 치과위생사 직업 인식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과위생사의 직업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47명(94.73%)으로 전공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14$ )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치위생학과 100명(99.0%), 간호학과 53명(94.6%), 기타 보건계열과 94명(89.5%)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 직업 인지 경로로는 학교 98명(39.7%)이 가장 많았고, 언론매체 12명(4.8%)이 가장 적었다.

Table 2. Recognition of dental hygienist (N=262)

Variables	Categories	Yes n(%)	No n(%)	$\chi^2 (p)$
Recognition of dental hygienist		247 (94.3)	15 (5.7)	8.601 (0.014)
Major	Dental hygiene	100 (99.0)	1 (1.0)	
	Nursing	53 (94.6)	3 (5.4)	
	Other health division	94 (89.5)	11 (10.5)	
Variables	Categories	n(%)		
Information pathway (N=247)	School	98(39.7)		
	Media	12(4.8)		
	Dental treatment	38(15.4)		
	Having acquaintance dental hygienist	62(25.1)		
	Through other people's stories	18(7.3)		
	Other	19(7.7)		

#### 3.2.2 치과위생사와 다른 직원과의 구별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과 의료기관에서 치과 위생사와 다른 치과 보조 인력을 구별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49명(56.9%)으로 전공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p<0.001$ ). 치위생학과 76명(75.2%), 간호학과 29명(51.8%), 기타 보건계열학과 44명(41.9%)이 구별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치과위생사를 구별할 수 있는 경로로는 '업무'를 보고 판단했다는 응답이 79명(53.0%)으로 가장 많았고 명찰 30명(20.1%)과 복장 28명(18.8%)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stinguishing dental hygienists from other staff (N=262)

Variables	Categories	Yes n(%)	No n(%)	$\chi^2 (p)$
Distinguishing dental hygienist from other staff		149 (56.9)	113 (43.1)	32.327 (<0.001)
Major	Dental hygiene	76 (75.2)	25 (24.8)	
	Nursing	29 (51.8)	27 (48.2)	
	Other health division	44 (41.9)	61 (58.1)	
Variables	Categories	n(%)		
Information pathway (N=149)	Uniform	28(18.8)		
	Appellation	9(6.1)		
	Work	79(53.0)		
	Name tag	30(20.1)		
	Self introduce	3(2.0)		

### 3.3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식도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호조무사의 치과 의료 기관 근무 여부를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165명(63.0%)으로 전공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p<0.001$ ). 치위생학과 84명(83.2%), 간호학과 31명(55.4%), 기타 보건계열학과 50명(47.6%)이 간호조무사가 치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것을 안다고 응답하였고,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의 인지 경로로는 학교 36명(21.8%),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32명(19.4%),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29명(17.6%), 가족 혹은 지인 중 치과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가 있어서 27명(16.4%), 언론매체(15.1%)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치과 보조업무가 포함된 것을 인지하는 응답자는 60명(22.9%)으로 전공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p<0.001$ )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치위생학과 40명(66.7%), 간호학과 11명(18.3%), 그리고 기타 보건계열학과 9명(15.0%)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cognition of nurse assistant engaged in dental clinic (N=262)

Variables	Categories	Yes n(%)	No n(%)	$\chi^2$ (p)
Recognition of nurse assistant engaged in dental clinic		165 (63.0)	97 (37.0)	49.754 ((0.001')
Major	Dental hygiene	84 (83.2)	17 (16.8)	
	Nursing	31 (55.4)	25 (44.6)	
	Other health division	50 (47.6)	55 (52.4)	
Variables	Categories	n(%)		
Information pathway (N=165)	School	36(21.8)		
	Media	25(15.1)		
	Dental treatment	32(19.4)		
	Having acquaintance nurse assistant	27(16.4)		
	Through other people's stories	29(17.6)		
	Other	16(9.7)		
Variables	Categories	Yes n(%)	No n(%)	$\chi^2$ (p)
Dental assistant work included in nurse assistant law		60 (22.9)	202 (77.1)	28.507 ((0.001')
Major	Dental hygiene	40 (66.7)	61 (30.1)	
	Nursing	11 (18.3)	52 (25.7)	
	Other health division	9 (15.0)	105 (52.0)	

### 3.4 치과위생사와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인지도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과위생사와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21명(84.4%)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치위생학과가 96명(95.0%), 간호학과 47명(83.9%), 기타 보건계열학과 78명(74.3%)으로 응답하였다. 치과위생사와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전문성과 숙련도 차이에 대한 인식도는 5점 만점에 치위생학과 4.42점, 간호학과 4.11점으로 응답하였고 3.75점으로 응답한 기타 보건계열학과와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

치과위생사의 업무 응답률은 응답자들이 해당 업무가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업무 항목을 나열하였다(Table 5). 치석 제거 230명(87.8%), 수술준비 및 협조 214명(81.7%), 인상 채득 209명(79.8%)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충치 치료 53명(20.2%), 국소마취 46명(17.6%), 발치 26명(9.9%)가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Table 5. Perception of the scope of practice of dental hygienists and nurse assistant engaged in dental clinic (N=262)

Variables	Categories	Yes n(%)	No n(%)	$\chi^2$ (p)
Difference in the scope of practice between dental hygienist and nurse assistant		221 (84.4)	41 (15.6)	16.824 ((0.001')
Major	Dental hygiene	96 (95.0)	5 (5.0)	
	Nursing	47 (83.9)	9 (16.1)	
	Other health division	78 (74.3)	27 (25.7)	
Variables	Categories	M±SD		
Awareness of work skills difference between dental hygienist and nurse assistant		4.08±0.84		
Major	Dental hygiene	4.42±0.74 <sup>a</sup>		
	Nursing	4.11±0.85 <sup>b</sup>		
	Other health division	3.75±0.81 <sup>ab</sup>		
Scopes of practice of dental hygienist			Yes answer n(%)	
Scaling			230(87.8)	
Preparing operation and assist			214(81.7)	
Impression			209(79.8)	
Oral health education			203(77.5)	
Fluoride therapy			196(74.8)	
Dental medical recording			175(66.8)	
Orthodontic wire application and removal			156(59.5)	
Sealant			154(58.8)	
Oral examination			143(54.6)	
Dental health insurance claim			126(48.1)	
Dental x-ray taking			123(46.9)	
Placing temporary appliance and removing			123(46.9)	
Stitch removal			121(46.2)	
Temporary filling			114(43.5)	
Making temporary crown			113(43.1)	
Cavity restoration			53(20.2)	
Local anesthesia			46(17.6)	
Tooth extraction			26(9.9)	

### 3.5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 명찰 패용 의무화 인지도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과 의료기관 내 종사자의 직무 명찰 패용을 관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38명(52.7%)으로 전공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 < 0.001$ )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치위생학과 78명(77.2%), 간호학과 18명(32.1%), 기타 보건계열과 42

명(40.0%)으로 나타났다. 치과 의료기관 내 종사자의 명찰 패용 의무화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4명(32.1%)이었다. 전공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 $p<0.001$ )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치위생학과는 54명(53.5%)이며 간호학과와 기타 보건계열학과는 각각 16명(28.6%), 14명(13.3%)으로 나타났다. 반면 명찰 패용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5점 만점에 3.17점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134$ ).

Table 6. Perception of the name tag standards for dental-associated workers (N=262)

Variables	Categories	Yes n(%)	No n(%)	$\chi^2 (p)$
Observing of dental associated workers wearing the name tag		138 (52.7)	124 (47.3)	40.661 (<0.001)
Major	Dental hygiene	78 (77.2)	23 (22.8)	
	Nursing	18 (32.1)	38 (67.9)	
	Other health division	42 (40.0)	63 (60.0)	
Enforcement of name tag standards for dental-associated workers		84 (32.1)	178 (67.9)	38.463 (<0.001)
Major	Dental hygiene	54 (53.5)	47 (46.5)	
	Nursing	16 (28.6)	40 (71.4)	
	Other health division	14 (13.3)	91 (86.7)	
Variables	Categories	M±SD		
Compliance with wearing name tag		3.17±0.90		
Major	Dental hygiene	3.28±1.04		
	Nursing	3.00±0.79		
	Other health division	3.16±0.80		

#### 4. 고찰

본 연구는 보건계열학과 대학생들이 가지는 치과위생사와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 범위 인식과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명찰 패용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 대상인 보건계열학과 대학생 중 94.7%가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해당 직업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였다. 서울, 경기도, 충청도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등[22]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인식도는 보건계열이 45.2%로 자연계열 37.9%, 인문계열 18.9%보다 높은 인식 수준을 갖고 있었으며 창원과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등의 설문에서 '78.5%'가 치과위생사의 직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보건계열과의 학생들이 비보건계열 대학생들보다 높은 치과위생사 인식도를 보인다고 여겨진다[23].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치과위생사 직업 인식의 주된 경로는 학교로, 이는 예비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박 등[24]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 직업 인식 경로로 가장 높게 나타난 '학교 수업'의 결과와 일치했다. 이는 치의학 또는 보건계열학과 대학생들과 같이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에게도 학교 교육 과정 등을 통해 치과위생사 직업 인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치과위생사 직업을 인식했다는 응답은 4.8%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이 등[22]의 설문 응답에서도 10.7%의 낮은 응답을 보인 것과 일치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언론매체를 통한 치과위생사 직업 홍보가 더 필요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치과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인식에 대한 문항에서 '알고 있다'가 63.0%로 나타났고 간호조무사 법에 치과 보조 업무의 포함인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알고 있다'가 22.9%로 저조하였다. '치과위생사와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차이가 있다'라고 응답한 연구대상자는 84.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법적 업무에 해당하는 '치석 제거', '인상 채득', '구강 보건 교육', '불소도포', '와이어 결찰 및 제거', '치면열구전색'은 5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으나, '구강 내 방사선 촬영'과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임시충전'은 50% 이하의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예비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 치과위생사의 구강 보건 교육 업무와 진료 협조 업무에 대해 인식률은 높았으나 '치면열구전색'과 '불소도포'에 대한 예방 치과 처치 업무는 낮게 인식되었다. 반면 치위생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에 대한 인식조사[21]에서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치석 제거 등에 예방 업무는 높게 인식되었으나, 감염방지, 수술준비 및 협조에 대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인식은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한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실제 임상에서 수행하는 업무보다 적게 명시되어 있으며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들 간의 업무 범위

불명확성 때문이라 사료된다. 김 등[20]의 연구에서는 치 의학과 재학생 대상으로 진료보조 인력의 업무 영역을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와 진료 보조 인력의 업무 영역에 관한 내용을 교육 과정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중 치과위생사와 치과 종사 간 간호조무사 업무의 전문성과 숙련도의 차이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치위생학과와 간호학과 응답자는 각각 4.42점, 4.11점으로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기타 보건계열학과에서는 3.7점으로 보통 수준이라 응답하였다. 치과 의료기관에서 수행되는 치과위생사와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한 경우 환자로서는 업무 행위로 치과 종사자들을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에 대한 각각의 전문성과 숙련도의 차이 또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 등[25]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인 치석 제거 및 치근 활택술을 비전공자도 모방하여 수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치과 의료 서비스가 추구하고 또한 환자가 요구하는 양질의 치과 의료 서비스[4]와는 거리가 먼 행위임은 분명할 것이다. 임상 현장의 치과위생사들은 업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자신의 법적인 업무 범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다[26]. 이러한 현상은 학교 교육 과정과 실제 임상 업무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미흡한 직무 분담이 직무 만족도의 감소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대한 정립과 관련 기관에서의 업무 범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연구대상자 중 “치과 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와 다른 직원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문항에 ‘그렇다’는 56.9%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와 다른 직원을 구별하는 주요 경로로는 직원이 하는 업무가 53.0%로 가장 높았으며, 명찰과 유니폼은 각각 20.1%, 18.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학과 학생과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과위생사 인식조사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유사하였다[23]. 이를 통해 의료소비자들은 의료종사자들의 업무와 명찰, 유니폼의 차이를 통해 구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등[20]과 Reinders 등[26]의 연구에서는 치과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와 치과위생사의 업무 영역에 관한 내용을 치의학과 대학생의 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치과 의료기관에서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명찰 패용 관찰에 대한 응답 중 ‘본 적 있다’가 52.7%로 나타났으며, 치

과 의료기관 명찰 패용 의무화 인식에 대한 문항에서는 ‘알고 있다’가 32.1%로 낮게 나타났다. 서울지역 치과대학·치의학 전문대학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행된 김 등[20]의 설문에서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의 시행을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도 38.2%로 낮게 나타난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치의학 또는 보건계열학과 대학생들의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박 등[27]의 연구에서 79.1%가 치과 위생사를 인지하였으나, 45.5%만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별한다고 응답하였고 구별의 기준으로는 명찰 착용이 41.1%, 업무가 20.6%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근무 중 또는 근무 예정인 의료종사자들이 치과 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를 인지하고 있으나, 의료 공여자의 신분을 구별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치과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 및 구분된 업무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보건계열과 재학생들은 치과위생사와 치과 종사 간호사의 업무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으나 치과 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 명찰 패용 의무화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되기 위해 보건계열학과 대학생들에게 의료법 준수와 직무 분담의 명확한 이해는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명찰 패용 인식 수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보건계열 대학생들에게 명확한 업무 범위 인식과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에 대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 5. 결론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와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식 및 업무 범위, 치과 종사 의료 인력의 명찰 패용 의무화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대상자들은 치과위생사의 업무와 명찰, 유니폼을 통해 다른 치과 보조 인력과 구분할 수 있었으며, 치과위생사와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범위와 숙련도에는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일부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계열 대학생의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

명찰 패용 관찰 경험 및 법령에 관한 인지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올바른 직업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 범위 및 명찰 패용 의무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본 연구는 충남에 소재한 보건계열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연구 도구로 업무 인식 여부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가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됨에 따라 치과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명찰 패용 준수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다양한 의료기관과 다양한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 인식과 명찰 패용 준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Reference

- [1] Big data strategy department, Health insurance treatment statistics [Internet].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c2023 [cited 2023 August 11], Available From: <https://zrr.kr/Tt85> (accessed July. 21, 2024)
- [2] H. Hoon, 2022 Report on the social survey, Report, Statistics Korea, Korea, pp.280-291
- [3] H. J. Yoo, Determinants of patient satisfaction at dental clinic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Environment, Seoul, Korea, pp.32, 2015.
- [4] K. S. Song, D. Y. Ryu, S. J. Lee, "The effect of dental hygienist prosthetic medical service on dental satisfaction and dental loyal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1, pp.713-718, Jan.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1.713>
- [5] H. M. Kim, S. Y. Im, H. S. Bae, "The professionalization of American dental hygienist",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4, No.3, pp.276-2864, Sep. 2014. DOI: <http://dx.doi.org/10.17135/idhs.2014.14.3.276>
- [6] J. L. Fried, "The allied dental professions: executive summary". Journal of Dental Education, Vol.81, No.9, pp.1130-1136, Sep. 2017. DOI: <https://doi.org/10.21815/JDE.017.069>
- [7] L. McKeown, S. Sunell, P. Wickstrom, "The discourse of dental hygiene practice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1, No.1, pp.43-48, Jul. 2004. DOI: <https://doi.org/10.1034/i.1601-5037.2003.00006.x>
- [8] Canadian Dental Assistants' Association, Scope of Practice[Internet]. ADAA c2022 [cited 2022 June, 12], Available From: <https://zrr.kr/eDOG> (assessed July. 28, 2023)
- [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edical technician Law, No. 1746, Article 2, paragraph 6 [cited 2020 December 15], Available From: <https://zrr.kr/OiXd> (assessed July. 28, 2023)
- [10] A. Kim, M. Choi, "A comparison of dental hygienists' legal duties among nations: Korea, USA and Canad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7, No.1, pp.18-28, March. 2019. DOI: <https://doi.org/10.33615/jkohs.2019.7.1.18>
- [11] J. H. Jeong, S. J. Mun, S. S. Bae, S. K. Kim, H. J. Noh, "A study on the dental hygienists' legal scope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9, No.2, pp.207-219, March. 2019. DOI: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19>
- [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edical Service Act, No. 20105, Article 80-2, paragraph 2 [cited 2015 December 29]. Available from: <https://zrr.kr/uSis> (assessed July. 28, 2023)
- [13] S. H. Hong, S. E. Moon, G. H. Seo, "A qualitative study on dental clinical assistance work performed in dental clinics - Focusing on nursing assistant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22, No.6, pp.565-574, Nov. 2022. DOI: <https://doi.org/10.13065/jksdh.20220063>
- [14] S. J. Lee, H. Y. Joe, "Work reality of dental assista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6, No.4, pp.153-159, Aug. 2015.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5.6.4.153>
- [15] Y. S. Kim, M. W. Shin,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weight of dental hygienists' work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8, No.3, pp.161-175, 2008.
- [16] Ulsan District Court, Violation of medical law, [Internet]. Delivery of judgment [cited 2021 April 8], Available From: <https://zrr.kr/wpaZ> (accessed Dec. 3, 2023)
- [17] Y. R. Choi, H. Y. Seo, E. J. Ryu, E. M. Cho.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6, No.6, pp.495-501. Nov. 2015 DOI: <https://doi.org/10.17135/idhs.2016.16.6.495>
- [1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Standards for Display of Identification Badges for Medical Professionals and Others, No.2021-188, Article 2, paragraph 5, [cited 2023 July, 28], Available From: <https://zrr.kr/zKq3> (assessed July. 28, 2023)
- [19] J. M. Choi, E. J. Lee, "The effect of the dental patients' perception about dental hygienist on the social demand of dental hygienis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2, No.4, pp.392-403, 2012
- [20] K. J. Kim, G. Lee, B. H. Jin, "A survey of the understanding of the scope of work undertaken by dental hygienists and chair-side dental assistants



among dental students in Seou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43, No.4, pp.224-231, Jan. 2019.

DOI: <https://doi.org/10.11149/jkaoh.2019.43.4.224>

- [21] S. Y. An, B. H. Kim, M. S. Kim, Y. S. Shim. "Nursing assistants' perception of students in dental hygiene for revision of dental assistance law",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4, No.3, pp.243-252, Sep. 2020.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20.14.3.243>
- [22] M. R. Lee, M. G. Ji, "Study on awareness and images of dental hygienists in som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9, No.1, pp.211-218, Jun. 2015.  
DOI: <http://doi.org/10.21184/ikeia.2015.06.9.2.211>
- [23] B. Y. Lee, J. Y. Lee, B. M. Im, H. J. Koo,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n dental hygienis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Vol.13, No.4, pp.277-286, Dec. 2011.
- [24] G. E. Park, Y. M. Lee, J. G. Lee, H. S. Jeon. "A survey on dental college students'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of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5, No.3, pp.531-538, Jun. 2015.  
DOI: <https://doi.org/10.13065/jksdh.2015.15.03.531>
- [25] S. E. Moon, S. H. Hong, N. Y. Kim, "A qualitative research on work scope in dental healthcare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9, No.6, pp.907-918, Nov. 2019.  
DOI: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77>
- [26] J. J. Reinders, W. P. Krijnen, B. Stegenga, C. Schans, "Perceived dentist and dental hygienist task distribution after dental and dental hygiene students' team intervention", Journal of Dental Education, Vol.81, No.4, pp.413-419, Apr. 2017.  
DOI: <https://doi.org/10.21815/JDE.016.009>
- [27] S. Y. Park, Y. S. Won, "Recognition of health care workers for dental hygienis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6, No.3, pp.127-140, Sep. 2012.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12.6.3.127>

김 애 리(Ae Ri Kim)

[정회원]



- 2020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응용생명과학과 (치의학박사)
- 2020년 9월 ~ 2023년 2월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물학교실 박사후연구원

- 2023년 3월 ~ 2023년 10월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BK21창의치의학융합교육연구단 연구조교수
- 2023년 11월 ~ 현재 : 화성의과학대학교 바이오헬스케어 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헬스케어, 보건의료

김 지 혜(Ji-Hey Kim)

[정회원]



- 2014년 2월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물학교실 (치의학박사)
- 2014년 3월 ~ 2016년 2월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물학교실 박사후연구원

- 2016년 3월 ~ 2019년 2월 : 전주기전대학 치위생과 조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치위생학, 치의학, 보건의료